##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6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전진숙ㆍ이인영ㆍ김정호

김윤덕 • 허종식 • 이훈기

안호영 · 김남희 · 권칠승

김선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안 제88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 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00을"을 "1천500을"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까지"를 "2024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각 연 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천분의 1천260
- 2. 2026년은 1천분의 1천275
- 3. 2027년은 1천분의 1천290
- 4. 2028년은 1천분의 1천305
- 5. 2029년은 1천분의 1천320
- 6. 2030년은 1천분의 1천335
- 7. 2031년은 1천분의 1천350
- 8. 2032년은 1천분의 1천365
- 9. 2033년은 1천분의 1천380
- 10. 2034년은 1천분의 1천395
- 11. 2035년은 1천분의 1천410
- 12. 2036년은 1천분의 1천425
- 13. 2037년은 1천분의 1천440
- 14. 2038년은 1천분의 1천455
- 15. 2039년은 1천분의 1천470
- 16. 2040년은 1천분의 1천485

제3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 2025년부터 2036년까지 각 연도

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 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만분의 465
- 2. 2026년은 1만분의 480
- 3. 2027년은 1만분의 495
- 4. 2028년은 1만분의 510
- 5. 2029년은 1만분의 525
- 6. 2030년은 1만분의 540
- 7. 2031년은 1만분의 555
- 8. 2032년은 1만분의 570
- 9. 2033년은 1만분의 585
- 10. 2034년은 1만분의 600
- 11. 2035년은 1만분의 615
- 12. 2036년은 1만분의 630
- ② 2025년부터 2036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천분의 93
- 2. 2026년은 1천분의 96

- 3. 2027년은 1천분의 99
- 4. 2028년은 1천분의 102
- 5. 2029년은 1천분의 105
- 6. 2030년은 1천분의 108
- 7. 2031년은 1천분의 111
- 8. 2032년은 1천분의 114
- 9. 2033년은 1천분의 117
- 10. 2034년은 1천분의 120
- 11. 2035년은 1천분의 123
- 12. 2036년은 1천분의 126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생 략)      |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현행 |
|                          |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u> &lt;신 설&gt;</u>      | ②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
|                          |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   |
|                          | 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
|                          |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부담하여야 한다.           |
|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                     |
|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u>1</u> | <u>1</u>            |
| <u>천200을</u> 곱한 금액으로 한다. | <u>천500을</u>        |
|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        |                     |
| 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        |                     |
| 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       |                     |
| 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         |                     |
| 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        |                     |
|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
| 등) ①・② (생 략)             |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③                   |
|                          |                     |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 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u>1천분의 45</u>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 ⑤ (생략)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7년까 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 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 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17. (생 략)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 1천분의 65                           |
|-----------------------------------|
| <del></del>                       |
| <b>4</b>                          |
|                                   |
|                                   |
|                                   |
|                                   |
| <u>1천분의 130</u>                   |
| ⑤ (현행과 같음)<br>비로 제0541 는 그미성그비 기보 |
|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
|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
| 적용례)2024년까                        |
| <u> </u>                          |
|                                   |
|                                   |
|                                   |
|                                   |
|                                   |
|                                   |
| 1. ~ 17. (현행과 같음)                 |
| <u>&lt;삭 제&gt;</u>                |